



금치산 선고 효력이 상실된다는데, 어떤 대안이 있을까?



Q. 저의 친동생이 정신장애 증상이 있어 집 근처 정신병원에 입원한 상태로 현재까지 진전이 전혀 없는 상태인데 2007년도에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금치산 선고를 받고 저의 어머니가 후견인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어머니가 연세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아 남동생의 후견인으로 역할을 하기가 힘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혼하여 부산에 살고 있는 제가 어머니 대신 남동생의 후견인이 되고 싶어 금치산 선고를 받았던 서울가정법

원에 얼마 전에 문의하였더니 2018. 7. 1.부터 금치산선고 효력이 상실되고 성년후견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머니 대신 현재 제가 거주하고 있는 부산가정법원에 청구해도 되는지 금치산 선고와 성년후견제도는 무엇이 다른지 알고 싶습니다.

A. 종전 「민법」(법률 제10429호, 2011. 3. 7.일부개정, 2013. 7. 1.시행) 부칙 제2조 제2항의 경과규정에 따라 2018. 7. 1.부터 종전 금치산 또는 한정

치산 신고는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이 상실됩니다.

즉, 민법 개정으로 인해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된 2013. 7. 1.부터 5년이 경과한 2018. 7. 1.부터 과거에 이미 금치산 신고를 받은 경우에도 효력이 상실되므로 종전에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신고를 받은 경우에도 정신적 제약이 계속되고 있는 등 필요한 경우 새로이 성년후견제도에 따라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의 지속적 결여가 있을 경우는 성년후견 심판 청구를, 피후견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본인, 배우자, 4촌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감독인, 임의(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정후견 심판 청구는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 피후견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본인, 배우자,

4촌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감독인, 임의(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는 개인별 능력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금치산·한정치산 신고를 받은 사람의 행위능력을 일률적으로 제한하였으나, 성년후견제도는 본인의 의사와 능력을 존중하여 후견 범위를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도 자기 의사와 의지에 따라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제도로 재산관리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피후견인의 신상에 관한 분야까지도 폭넓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각급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 지원(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하는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에 성년후견제도 안내, 절차안내, 기타 자세한 문의를 할 수 있습니다.

※ 금치산·한정치산제도와 성년후견제도의 비교

내 용		금치산·한정치산 제도	성년후견제도
제 도	본 질	가족제도	복지제도
	목 적	재산관리에 중점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중점
	방 식	능력박탈(제한)	능력지원
피후견인	사 유	심신상실/심신미약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
	종 류	금치산/한정치산	성년/한정/특정/임의 후견
후견인	자 격	친족	친족 또는 제3자(법인 포함)
	선임방식	법정되어 있음	법원의 직권선임
	감독기관	친족회	법원(후견감독인)
법 원	역 할	능력박탈(제한)의 선언	후견인 선임과 감독
	성 격	사법적(司法的)	행정적(行政的)

[임대차보증금과 차임 거절 가부]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까?



우리 민법이 규율하는 임대차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민법 제618조). 임대차는 임차물 자체를 반환한다는 점에서 소비대차와 다르고, 사용 및 수익 대가를 지급한다는 점에서 사용대차와 다릅니다. 임대차는 물건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 타인의 물건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오늘날 매매와 더불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중요한 계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독특하게 임대차에 있어서 차임 이외 보증금의 명목으로 거금이 수수기도 하는데, 이러한 보증금의 성질에 관하여 우리 대법원은 부동산 임대차에 수수된 보증금은 차임채권, 임차물의 멸실, 훼손 기타의 원인에 의한 손해배상채권 등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대인의 모든 채권을 담보하는 것으로

서 임대차가 종료되어 목적물을 반환받을 때, 명백하고도 명시적인 반대약정이 없는 한, 임대인의 모든 채권액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으로부터 당연히 공제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다230020 판결 등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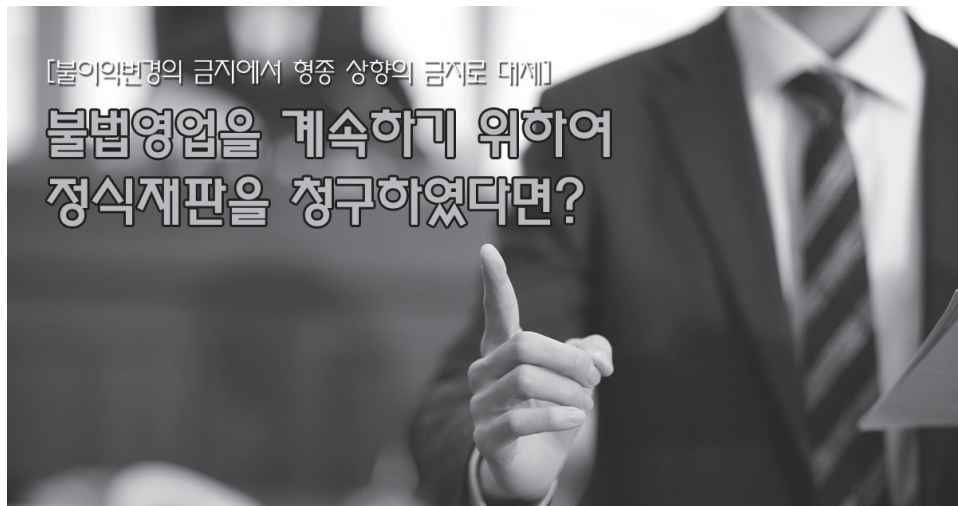
그렇다면 임차인으로서 임대차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당연히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궁금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대법원은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이 교부되어 있더라도 임대인은 임대차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는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충당할 것인지 여부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고, 따라서 임대차계약의 종료 전에는 공제 등의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연체차임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임차인도 임대차

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다211309 판결 참조).

그러므로 당사자 간의 약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상태에서 차임 지급을 거절한다면, 임대인이 연체 차임을 임대차보증금으로부터 충당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

급하여야 하고(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5다459(본소), 2005다466(반소) 판결 참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을 것이며(민법 제640조, 제641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계약의 갱신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약식절차는 통상의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서면 심리만으로 약식명령에 의하여 벌금, 과료를 과하는 간이한 형사절차로서, 소송경제상으로 유익하고 형사재판의 신속을 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개재판에 대한 피고인의 사회적,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고 공판정의 출석을 위한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

서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95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의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에게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적용하지

않게 되면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피고인이 더 중한 형을 선고받을 우려로 인해 위촉된 나머지 정식재판청구를 기피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의 초래를 방지하는 것이 입법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식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피해가 확대된 경우와 같이 공판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진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를 회유하거나 증거를 조작하여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밝혀진 경우 또는 벌금 집행의 지연이나 불법 영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정식재판청구를 남용하는 경우 등에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으로 인하여 죄질이나 국민의 법감정에 맞지 아니한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사건이 급증함에 따라 사법역량이 오히려 경미한 사건에 집중되어, 경미한 사건을 간소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려는 약식명령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2017. 12. 19.부터 시행된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시정하는 한편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권 위축 우려를 감안하여 ‘불이익변경의 금지’를 ‘형중 상항의 금지’로 대체하고 양형상항 시 양형 이유를 기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이 청구된 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징역형으로 바꾸어 선고할 수는 없지만, 공판결과에 따라 약식명령에서보다 중한 벌금형을 선고할 수는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정식재판청구의 남용을 방지하고 사법정의와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는 충실한 재판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료이용/법원사람들〉